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총포, 탄약, 폭발물 분실한 경우 형량 상향〉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6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강대식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4. 11. 28.
3. 회부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4조는 군용물 분실의 죄로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75조는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분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총포, 탄약, 폭발물의 분실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그 밖의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u>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74조(군용물 분실)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u>
<u><신 설></u>	<u>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u>
<u><신 설></u>	<u>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u>

- 현행법은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분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 제75조¹⁾에서 군용물 등에 관하여 절도, 강도 등의 죄를 범한 때에 그 대상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인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비해 가중처벌하도록 구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총포, 탄약, 폭발물을 분실했을 때는 그 밖의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총포, 탄약, 폭발물의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인바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 현행법 제75조에서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전투력의 핵심적 요소인 총포, 탄약, 폭발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로서 다른 군용물의 재산범죄에 비하여 특히 엄중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²⁾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총포, 탄약, 폭발물의 분실을 다른 군용물의 분실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총포, 탄약, 폭발물의 분실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用に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2헌바45 결정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우선, 「군형법」 제75조에서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용물 중 총포, 탄약, 폭발물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취득 등의 범죄행위는 사용·수익의사를 전제로 물건을 탈취하는 것으로서 물건을 분실하는 행위와 가벌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물건을 분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이 비례원칙상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 군용물분실죄는 군용물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³⁾인바, 군용물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한다는 점에 대한 의욕 또는 인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군용물절도죄 등의 범죄행위와 다르며 군용물을 고의 없이 자신의 재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경우 과실절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⁴⁾.

3)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군형법 제74조에 규정된 군용물분실죄는 동조 소정의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소대장)이 휴식시간동안 권총과 탄띠를 전차관물대 위에 풀어 놓고는 휴식이 끝났는 데도 그대로 방치한 채 전차를 출발시킨 때문에 전차의 진행, 동요로 위 권총 등을 땅에 떨어뜨리고 지나감으로써 군용물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49 판결)

○ 또한, 현행법에서도 군용물 분실을 제외하고는 분실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총포 소지를 허가받은 자 등이 총포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시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⁵⁾하고 있을 뿐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군용물 분실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도 가능하고 타인의 절취행위로 인하여 군용물분실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절도피해자이면서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군용물분실죄를 비범죄화하고, 징계처분으로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073

4) 박찬걸, 『군형법』, 2021, p.294 ~ p.29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762판결(절도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을 오인하여 그 재물이 자기에게 취득(벌린 것)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의가 조각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총포만 해당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등)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박안서, 『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통권 제88호, 2011), p. 164, p. 180